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운영(시설물경계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

1. 평소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인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9.1.1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에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중 기계경비업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공공기관이 입찰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대기업을 참여가 가능합니다.
4. 또한 시설물경비서비스 특이사항에 있는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시설물 경비를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이 경우 해당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5.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법률에서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수의계약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이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조달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무만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기관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리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선권고 또는 필요시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할 예정이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관할지역 시설물경비서비스 제공업체 검색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내지 관련 조합(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TEL 02-3151-114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



수신자 1. 국가기관, 2. 광역지자체, 3.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 4. 특별법인, 5. 기초자치단체, 6. 지방의료원, 7. 시도교육청, 8. 준정부기관, 9. 기타공공기관, 2-1. 지방청, 3. 지방사무소, 4. 국립공고, 5. 산하기관

주무관 이상수 판로지원과장 2019. 12. 4. 이희정

협조자

시행 판로지원과-1444 (2019. 12. 4.) 접수 조정협력과-1549 (2019. 12. 4.)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 www.mss.go.kr

전화번호 042-481-4546 팩스번호 042-472-7932 / snake011@korea.kr / 대국민 공개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